

## 부속서 I의 부록 4

### 영역원칙의 면제

1.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 지위의 취득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되는 재료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제5항가호에 규정된 대로 총 추가가격이 원산지 지위가 주장된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나.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제6조에서 열거된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칠 것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록의 끝 부분에 규정된 표에 열거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 지위의 취득은 당해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 예를 들어 공단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제5항나호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이 원산지 지위가 주장된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나.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재수입된 재료 또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을 통하여 제조자에게 획득되었음이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제2항의 목적상, 다음의 문장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1항의 목적상, 부속서 I의 부록 2의 규정이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그러한 제한 또는 금지는 당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

료의 최대 가격을 규정하는 부속서 I의 부록 2의 규정이, 해당 최종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결정에 적용되는 경우, 제5항나호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이 기재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총 추가가격과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1항의 목적상, “총 추가가격”은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당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축적된 비용 뿐만 아니라 당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나. 제2항 및 제4항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은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자료 그리고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축적된 모든 다른 비용 뿐만 아니라 영역 안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이미 취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요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부속서 I의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 그리고 부속서 I의 제5조제2항에 기재된 일반 미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2항에 규정된 표를 포함하여, 이 부록의 개정은 이 협정 제8.1조제7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내려지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8.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세 번째 해에, 당사국들은 이 부록의 규정과 이행을 검토하고, 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규정을 개정한다.

## 표

###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710, 390720, 390810, 391000, 392113, 392310, 392330, 392350, 392390,  
392690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1699

**제 42 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211, 420212, 42022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10,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1,  
610312, 610319, 610321,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1, 610421, 610431,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410, 611420,  
611430, 611490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1,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10,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2,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10,

620920, 62093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1, 621132, 621141, 621142, 621143, 621149

제 64 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299, 640399, 640411, 64061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1590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1719, 711790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2393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990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730, 821300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230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991, 841330, 841510, 841582, 841583, 841590, 842123, 842131, 842139,  
842410, 842420, 842490, 848590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431, 851220, 851190, 852990, 853400, 853630, 853650, 853669, 853690,  
853929, 854091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991, 871499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690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910112,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2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1, 910919,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 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20, 911430, 911440, 911490

**제 96 류      잡품**

961610

## 부속서 II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지리적 적용

이 협정을 비준할 때, 노르웨이왕국은 상품무역을 제외하고 스발바드 지역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